
2019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 “201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시 및 정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대학교

1. 주요 변경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018	2019	비고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60	60	
	학생부종합	사향인재추천	20	30	10명 증원
		교직인성우수자	120	120	
		다문화가정자녀	5	5	
		특수교육대상자	10	10	
		기회균형선발 I	15	0	기회균형선발 II 전형과 통합
		기회균형선발 II	0 (정시10)	15	기회균형선발 I 전형과 통합 (수시 15명, 정시 10명에서 수시 15명으로 10명 감원)
		농어촌학생	0 (정시 9)	4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5명 감원)
	국가보훈대상자	0	5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기타	재외국민	5	7	2명 증원
소계			235	256	
정시	수능위주	일반전형	131	135	4명 증원
		기회균형선발 II	10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농어촌학생	9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국가보훈대상자	5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소계			155	135
합계			390	391	

2.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시(학교장추천, 교직원성우수자)

-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한 경우 4개 영역 합 11등급이내

○ 정시 (모든 전형)

-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실질 반영률 및 전형단계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1단계(2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7 + 면접 33
	학생부종합	사향인재추천	1단계(3배수) : 서류 100 (학생부, 교사추천서2부, 자기소개서)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교직원성우수자	1단계(2배수) : 서류 100 (학생부, 자기소개서)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재외국민	1단계(5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정시	수능위주	일반전형	1단계(2배수) : 수능 100 2단계 : 수능 80 + 면접 20

II. 전형개요

항목		내용
수시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 전형 : 60명 · 사향인재추천 전형 : 30명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 120명 ·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 5명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10명 · 기회균형선발 전형 : 15명 · 농어촌학생 전형 : 4명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 5명 · 재외국민 특별전형 : 7명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 전형 : 1단계(2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7 + 면접 33 · 사향인재추천 전형 :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교사추천서 2부, 자기소개서) 100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 1단계(2배수) :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100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과 동일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과 동일 · 기회균형선발 전형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과 동일 · 농어촌학생 전형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과 동일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과 동일 · 재외국민 특별전형 : 1단계(5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 전형 : 석차등급이 표기된 전 과목(음악, 미술, 체육은 자체기준에 의해 평가)
	우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 전형’과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지원자 중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모두 선택한 학생의 경우 최저학력등급 11등급 적용(※ 한국사는 4등급 별도 적용)
정시 (나)군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 135명
	전형요소 실질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모집단위 1단계(2배수) : 수능 100 <u>2단계 : 수능 80 + 면접 20</u>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모집단위 : 국어 33.3 + 수학(가/나) 33.3 + 탐구(사회/과학) 33.3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가형 5% 가산점, 과학탐구 5% 가산점
	탐구 영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모집단위 사탐 또는 과탐 2과목 (2과목 평균 반영)

III. 수능 최저학력기준

시기	전형명칭	최저기준
수시	학교장추천 전형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4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단, 수학 가와 과탐을 선택한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11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교직원성우수자 전형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4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단, 수학 가와 과탐을 선택한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11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사향인재추천 전형	수능 최저 없음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	수능 최저 없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수능 최저 없음
	기회균형선발 전형	수능 최저 없음
	농어촌학생 전형	수능 최저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수능 최저 없음
재외국민 전형	수능 최저 없음	
정시 (나)군	일반전형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IV. 지원자격

시기	전형	지원자격
	학교장추천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9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소속 고등학교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교직원성우수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2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제외)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사향인재추천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9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나. 교사 2인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단,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3년 4월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회균형선발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3년 4월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소년소녀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포함) 또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시기	전형	지원자격
	농어촌학생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4년 2월 이후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부모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개정 고등교육법시행령(2011년 10월 17일)에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교 출신자 ※ 부모거주지, 학생거주지, 학교소재지는 동일한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함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참전 유공자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재외국민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자 포함)한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
정시 (나)군	일반전형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p>